

고 성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61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3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3. 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3. 29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·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(안 제2조)
- 나.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(안 제4조)
- 다.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- 라.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(안 제10조)
- 마.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삭제(안 제15조, 안 제16조)
- 바.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삭제(안 제24조의 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정문화재 및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범위를 과세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개선 ·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3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